

Pensions at a Glance 2025



1 들어가며

- ▶ OECD는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2년 주기로 발행되는 「Pensions at a Glance」를 통해 광범위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OECD 회원국과 그 외 국가들에 대한 상세 국가별 프로필에 대해서는 웹사이트 참조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ensions-at-a-glance-2025_e40274c1-en/support-materials.html)

- 본 고에서는 2025년 11월 27일에 게시한 「Pensions at a Glance 2025」에 대하여 연금대체율, 노인 인구의 소득과 빈곤, 연금제도의 재정, 최근의 연금개혁 및 연금 성별 격차 등 주요 내용을 소개 하도록 하겠음

2 주요내용

▶ 연금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

- 미래 총 연금대체율은 근로 당시의 소득 대비 은퇴 후 의무가입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에서 지급한 연금급여의 수준을 나타냄
- 2024년 22세에 연금제도에 가입한 평균소득 근로자가 국가별 정상연금수급연령에 퇴직하여 완전 경력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단, 국가별로 정상연금수급연령이 다르므로 실제 기여기간은 상이함), OECD 국가 평균 미래 총 대체율(공적연금+강제적 사적연금)은 52%임
 -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30% 미만으로 낮은 편이고,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페인은 75%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4%로, 2년 전 발간된 Pensions at a Glance 2023의 31.2%보다 2.2% 높아졌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 43%보다 낮은 수준임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B값(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이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동일할 때 40%가 되며, B값이 A값보다 높은 자의 소득대체율은 40%보다 낮아짐. 본 보고서에서는 A값으로 한국 평균 근로자 소득보다 낮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을, B값은 평균 근로자 소득을 적용하여 40%보다 낮게 산출됨

*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 감소 계획(2008년 50%→2028년 40%)을 멈추고(2025년 41.5%), 2026년부터 43%로 인상

〈표 1〉 강제적 공적제도, 강제적 사적제도의 총 연금 대체율(개인 소득 대비 비율)

	개인 소득 대비 비율								
	강제적 공적			강제적 사적(DB 및 DC)			총 강제적		
	0.5	1	2	0.5	1	2	0.5	1	2
호주	44.9	14.4	0.0	26.4	26.4	26.4	71.3	40.8	26.4
오스트리아	74.1	74.1	52.5				74.1	74.1	52.5
벨기에	61.7	43.5	28.2				61.7	43.5	28.2
캐나다	47.3	37.1	18.5				47.3	37.1	18.5
칠레	24.5	12.2	0.0	37.3	37.4	37.5	61.8	49.7	37.5
콜롬비아	80.6	74.8	44.4			12.8	80.6	74.8	57.1
코스타리카	55.6	55.6	53.2	10.1	10.1	10.1	65.7	65.7	63.2
체코	71.4	44.2	30.6				71.4	44.2	30.6
덴마크	71.4	29.0	9.8	43.8	43.8	43.8	115.2	72.7	53.6
에스토니아	51.2	29.3	18.4				51.2	29.3	18.4
핀란드	57.8	57.8	57.8				57.8	57.8	57.8
프랑스	56.6	56.6	47.4				56.6	56.6	47.4
독일	46.3	42.1	30.2				46.3	42.1	30.2
그리스	91.4	79.6	73.7				91.4	79.6	73.7
헝가리	53.7	51.9	50.9				53.7	51.9	50.9
아이슬란드	25.9	0.5	0.0	43.4	43.4	43.4	69.3	43.9	43.4
아일랜드	48.5	24.3	12.1				48.5	24.3	12.1
이스라엘	18.2	9.1	4.5	44.2	33.8	16.9	62.3	42.8	21.4
이탈리아	70.6	70.6	70.3				70.6	70.6	70.3
일본	51.4	36.5	29.0				51.4	36.5	29.0
한국	50.6	33.4	20.2				50.6	33.4	20.2
라트비아	52.6	38.7	38.7				52.6	38.7	38.7
리투아니아	26.9	17.4	12.7				26.9	17.4	12.7
룩셈부르크	88.4	75.6	69.2				88.4	75.6	69.2
멕시코	85.5	28.1	5.3	35.6	41.4	41.4	121.1	69.6	46.7
네덜란드	57.3	28.6	14.3	29.3	46.1	54.5	86.6	74.7	68.8
뉴질랜드	64.7	39.5	19.7				64.7	39.5	19.7
노르웨이	54.0	40.6	23.1	5.5	5.5	5.3	59.5	46.1	28.4
폴란드	31.3	28.6	28.0				31.3	28.6	28.0
포르투갈	73.8	72.4	70.1				73.8	72.4	70.1
슬로바키아	70.1	58.0	49.2				70.1	58.0	49.2
슬로베니아	67.9	45.9	45.4				67.9	45.9	45.4
스페인	80.6	80.4	49.9				80.6	80.4	49.9
스웨덴	50.6	50.1	28.6	13.6	13.6	49.7	64.2	63.7	78.3
스위스	35.6	23.4	12.0	19.8	19.0	9.5	55.4	42.4	21.5
터키	69.1	69.1	69.1				69.1	69.1	69.1
영국	44.8	22.4	11.2	20.8	22.3	18.7	65.6	44.7	29.9
미국	50.5	39.7	28.5				50.5	39.7	28.5
OECD	56.8	43.0	32.3				65.5	52.0	42.0
아르헨티나	89.5	68.7	58.3				89.5	68.7	58.3
브라질	88.4	88.4	75.5				88.4	88.4	75.5
중국	101.1	80.6	70.3				101.1	80.6	70.3
인도	23.4	23.4	0.0	15.9	15.9	20.8	39.2	39.2	20.8
인도네시아	33.1	33.1	32.1	20.3	20.3	20.3	53.4	53.4	52.4
사우디아라비아	70.2	70.2	54.5				70.2	70.2	54.5
남아프리카공화국	15.5	7.8	3.9				15.5	7.8	3.9
EU27	59.6	49.2	40.0				64.3	54.5	46.9

자료: OECD(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p.165.

▶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Income poverty rates of older people)

- 빈곤 기준선은 균등화 한 가구 중위 가처분소득의 50%이며,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 기준선 아래에 있는 66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로 나타냄
 - 다만, 한국의 공식 노인빈곤율은 6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어 OECD 기준과는 차이가 있음
- OECD 국가별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 평균은 14.8%로 전체 인구의 빈곤율인 11.5%에 비해 높음
 - OECD 37개국 중 17개국은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전체 인구의 소득 빈곤율보다 낮으며, 20개국은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더 높음
 - 노인 인구와 전체 인구 사이에 소득 빈곤율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한국으로, 노인빈곤율이 전체 인구보다 24.8%p 높음. 라트비아와 뉴질랜드가 그 뒤를 따르며 각각 21.3%p, 19.4%p 차이
- 한국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국가 평균인 14.8%에 비해 크게 높음
 - * (한국) 49.6%(15년), 45.7%(17년), 43.8%(19년), 43.4%(21년), 40.4%(23년)
 - * (OECD 평균) 12.4%(15년), 12.5%(17년), 13.5%(19년), 13.1%(21년), 14.2%(23년)
 - 2015년 이후 한국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임

〈표 2〉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소득 빈곤율(2022년 또는 그 이후)

	노인인구(65세 초과)						전체 인구		노인인구(65세 초과)						전체 인구
	전체	연령별		성별		전체			연령별		성별				
		66-75세	75세 초과	남	여				66-75세	75세 초과	남	여			
호주	22.6	19.7	27.0	18.2	26.6	12.6	한국	39.7	29.8	54.0	32.6	45.0	14.9		
오스트리아	11.6	11.6	11.7	9.4	13.4	9.6	라트비아	34.3	28.1	41.7	24.1	39.1	16.2		
벨기에	7.7	6.9	8.9	7.0	8.4	6.9	리투아니아	24.6	25.3	23.8	11.4	31.5	14.1		
캐나다	10.1	10.4	9.6	8.7	11.3	12.2	룩셈부르크	7.0	7.0	7.0	6.2	8.0	8.9		
칠레	16.2	15.6	17.0	15.0	17.0	16.3	멕시코	18.3	15.5	22.8	17.3	19.1	15.0		
콜롬비아							네덜란드	4.6	3.3	6.5	4.5	4.7	7.0		
코스타리카	25.8	24.2	28.3	26.0	25.6	21.2	뉴질랜드	33.7	26.9	44.7	30.2	36.9	14.3		
체코	7.6	6.8	8.9	3.4	10.7	6.2	노르웨이	4.1	3.2	5.2	2.6	5.3	8.0		
덴마크	5.0	3.8	6.4	4.2	5.7	6.3	폴란드	12.8	13.1	12.1	8.5	15.6	9.1		
에스토니아	37.4	31.3	45.4	24.2	44.5	16.2	포르투갈	11.0	10.2	11.9	7.8	13.4	11.2		
핀란드	4.8	4.0	5.7	2.9	6.3	6.8	슬로바키아	7.2	6.9	7.7	5.0	8.6	9.4		
프랑스	6.1	5.6	6.7	4.8	7.2	8.3	슬로베니아	12.8	12.2	13.8	10.2	14.8	7.9		
독일	12.6	14.9	11.0	10.0	15.2	11.8	스페인	13.1	11.5	15.1	10.7	15.0	13.7		
그리스	10.0	8.5	11.5	7.2	12.1	11.2	스웨덴	7.3	6.2	8.6	5.4	9.0	8.0		
헝가리	10.1	9.2	11.7	4.7	13.5	9.9	스위스	18.8	15.9	22.4	16.3	21.1	10.7		
아이슬란드	3.1	4.0	1.1	4.5	1.7	4.9	터키	11.9	10.3	15.2	10.3	13.2	13.2		
아일랜드	9.5	7.9	11.9	8.9	10.0	7.0	영국	15.0	12.0	18.8	13.3	16.5	12.6		
이스라엘	15.3	14.0	17.4	13.1	17.2	16.8	미국	22.9	20.4	26.7	19.9	25.4	18.1		
이탈리아	12.0	11.3	12.7	9.7	13.8	12.2									
일본	20.0	16.2	24.1	16.6	22.8	15.4	OECD	14.8	13.1	17.2	11.7	16.9	11.5		

주: 중위 균등화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소득의 비율

자료: OECD(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p.211.

▶ 의무연금 기여율(Mandatory pension contribution rates)

- 의무연금 기여율은 근로자가 자신의 연금 수급을 위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기여형 연금은 제외
 - OECD 38개국에서 2024년 평균 소득자에 대한 총 유효 의무연금(공적연금+의무사적연금) 기여율은 평균 18.8%
 - 총 의무 기여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33%로 이탈리아이며, 가장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8.456%이나, 향후 15%로 2030년까지 인상될 예정임
- 벨기에,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의 기여율은 민간 부문 근로자에 적용되는 사회보험 기여율을 의미함
 - 이 국가들의 연금기여금은 장애급여, 상병수당, 실업급여 등 다른 사회보험과 분리하기가 어려움
- 2024년 한국 평균 소득자의 기여율은 9%로, OECD 38개국의 평균인 18.8%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임
 - *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까지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였으나,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의 보험료율 적용 예정

〈표 3〉 2024년 평균근로자에 대한 의무연금 기여율

	명목 기여율					한도(총 평균소득 대비 비율), 공적제도 / 사적제도	평균소득에 대한 유효 기여율
	피고용인, 공적	고용주, 공적	피고용인, 사적	고용주, 사적	총		
호주			0.0	11.5	11.5	2.51	11.5
오스트리아*	10.25	12.55			22.8	1.38	22.8
벨기에**	7.50	8.86			16.4	1.28	16.4
캐나다*	5.95	5.95			11.9	0.78	9.2
칠레			11.1	1.5	12.6	2.76	12.6
콜롬비아	4.0	12.0			16.0	12.90	16.0
코스타리카	4.17	5.42	1.0	3.25	13.84	None	13.84
체코*	6.5	24.8			31.3	3.84	31.3
덴마크*			4.0	8.0	12.0	None	12.7
에스토니아	0.0	20.0			20.0	None	20.0
핀란드*	7.47 [a]	17.34			24.81 [a]	None	24.81 [a]
프랑스	11.3 [w]	16.5 [w]			27.8 [w]	1.03 / 8.25	27.8
독일*	9.3	9.3			18.6	1.43	18.6
그리스*	9.67	16.33			26.0	4.10	26.0
헝가리	10.0	11.6			21.6	None	21.6
아이슬란드*	0.0	6.25	4.0	11.5	21.8	None	21.8
아일랜드**	4.0	11.05			15.1	None	15.1
이스라엘	7.0 [w]	7.6 [w]	6.0	6.5	27.1 [w]	2.99 / 0.76	19.3
이탈리아*	9.19	23.81			33.0	3.36	33.0
일본	9.15	9.15			18.3	2.27	18.3
한국	4.5	4.5			9.0	1.35	9.0
라트비아	10.0	10.0			20.0	3.87	20.0
리투아니아*	8.72	0.0			8.72	4.43	8.72
룩셈부르크*	8.0	8.0			16.0	2.08	16.0
멕시코			1.125	7.331 [w]	8.456 [w]	4.95	8.456
네덜란드	18.0	0.0	6.2	12.4	36.6	0.58 / 2.09	22.0
뉴질랜드					0.0		0.0
노르웨이**	7.8	13.0	0.0	2.0	22.8	None / 1.92	22.8
폴란드	9.76	9.76			19.52	2.43	19.52
포르투갈	7.2	15.5			22.7	None	22.7
슬로바키아	4.0	18.75			22.8	10.31	22.8
슬로베니아*	15.5	8.85			24.35	2.08	24.35
스페인**	4.7	23.6			28.3	1.79	28.3
스웨덴	7.0	10.81	0.0	4.5 [w]	22.31 [w]	1.06 / none	22.3
스위스	4.35	4.35	6.25 [a,w]	6.25 [a,w]	21.2 [a,w]	None / 0.89	16.6 [a]
터키*	9.0	11.0			20.0	3.17	20.0
영국**	8.0 [w]	13.8 [w]	5.0	3.0	29.8 [w]	None / 0.98	26.6
미국	5.3	5.3			10.6	2.39	10.6
OECD 38	6.2	9.8	1.0	1.8			18.8

주 1) * 기여율이 장애연금이나 산재보험의 장해급여의 재정도 조달함

2) **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기여율을 의미함

3) [a], [w] 각각 연령과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율이 상이함

자료: OECD(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p.221.

▶ 노인가구 소득비중(Income sources of older people)

- 노인가구의 주 소득원은 공적 이전소득, 사적 퇴직 이전소득, 소득으로 구분하고, 총 균등화 가구소득 대비 비중을 제시함

* 공적 이전소득에는 소득비례연금, 자산조사형 연금 등이 포함되고, 사적 퇴직 이전소득은 연금, 퇴직급여, 사망수당 등이 포함

* 자본소득은 비연금성 저축의 수익으로 인한 소득과 사적 개인연금을 포함하며, 근로소득은 임금과 자영업소득이 포함됨

- 4가지 주요 소득원 중 공적 이전소득과 사적 퇴직 이전소득의 비중은 각각 OECD 평균 55.9%, 7.1%로 총 소득의 2/3를 차지함

- 공적 이전소득 의존이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로 총 소득의 약 80%를 차지

- 사적 퇴직 이전소득은 OECD 14개국에서 중요한데, 네덜란드가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근로소득은 평균적으로 노인 소득의 약 27%를 차지, 소득이 가구 단위로 측정되므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층도 포함될 수 있음

- 자본소득은 평균적으로 노인 소득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자본소득(대부분 사적연금)이 40%의 비중을 보임

- 한국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의 29.1%, 자본소득이 21.0%, 근로소득이 4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시됨

- 사적 퇴직 이전소득은 거의 없으며 근로소득이 노인 소득의 절반 수준으로 중요한 소득원임을 알 수 있음

〈표 4〉 노인의 소득원, 2022년 또는 그 이후

	공적이전소득	사적퇴직이전소득	자본소득	근로소득
콜롬비아	0.0	0.0	0.0	0.0
한국	29.1	0.0	21.0	49.9
캐나다	32.7	0.0	42.6	24.6
멕시코	13.0	26.4	9.7	50.9
미국	38.3	5.4	23.2	33.2
뉴질랜드	45.1	0.0	16.7	38.2
코스타리카	47.1	0.0	10.7	42.2
터키	50.5	0.0	14.8	34.8
칠레	24.0	26.8	6.2	43.0
일본	50.0	2.0	8.0	40.0
호주	32.8	24.8	16.3	26.2
덴마크	43.2	14.7	22.0	20.2
아이슬란드	58.1	0.0	9.7	32.2
이스라엘	29.8	28.4	10.0	31.9
라트비아	58.2	0.0	2.2	39.5
슬로바키아	59.3	0.0	0.4	40.3
폴란드	61.0	0.0	1.0	38.0
에스토니아	62.5	0.0	4.7	32.7
OECD	55.9	7.1	10.0	27.0
아일랜드	64.3	0.0	5.3	30.4
리투아니아	65.0	0.0	4.0	30.9
헝가리	67.3	0.0	2.8	29.8
스웨덴	50.3	18.4	15.0	16.3
포르투갈	68.9	0.0	4.8	26.3
스페인	69.8	0.0	8.0	22.2
독일	66.1	3.9	10.0	20.1
스위스	42.2	29.0	12.0	16.8
슬로베니아	71.7	0.0	4.3	24.0
영국	42.5	29.7	12.9	14.8
노르웨이	59.1	14.7	6.9	19.3
이탈리아	74.0	0.0	5.4	20.7
체코	75.5	0.0	2.7	21.8
그리스	75.7	0.0	4.4	19.8
프랑스	78.1	0.0	15.0	6.9
룩셈부르크	78.1	0.0	12.2	9.7
오스트리아	78.2	0.0	5.1	16.7
네덜란드	40.3	38.9	8.1	12.8
핀란드	80.7	0.0	9.4	9.9
벨기에	85.2	0.0	3.9	11.0

주: 총 균등화 가구소득 및 이전 대비 비율

자료: OECD(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p.209.

▶ 최근 연금개혁 동향

- 2023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OECD 국가에서 다양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음. 본 고에서는 이 중 연금수급연령 인상, 근로 지속 유인 정책, 근로-연금 병행,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연금액 인상,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선,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
- 연금수급연령 인상
 - (체코) 현재 2030년 65세 도달을 목표로 연금수급연령을 매년 2개월씩 인상 중이며, 이후에도 매년 1개월씩 추가 인상하여 2056년 67세 도달 예정
 - (슬로베니아) 15년 가입자(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요건)는 연금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40년 가입자(완전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요건)는 60세에서 62세로 2028년~2035년 동안 인상
- 근로 지속 유인 정책(incentives to work longer)
 - 1) 조기연금 수급요건 강화
 - (슬로바키아) 개혁 이전 40년 가입자는 조기연금 수급 가능했으나, 개혁 이후 기대수명과 연계된 연금수급연령을 기준으로 조기연금 수급 가능 가입기간을 조정하고, 조기연금 감액률도 월 0.3%에서 0.5%로 증가
 - (이탈리아) NDC 연금만 적용되는 자(1996년 이전 기여가 없는 자)의 경우, 개혁 이전 20년 가입자는 조기연금 수급이 가능했지만, 개혁 이후 2025년부터는 25년 가입 기간, 2030년부터는 30년 가입 기간 필요
 - 2) 연기연금 인센티브 강화
 - (오스트리아) 연기연금 증액률이 연 4.2%에서 연 5.1%로 인상, 최대 15.3%까지 적용
 - (아일랜드) 기초연금 수급연령은 66세(2026년 기준)이나, 66세에서 70세까지 연기 가능하도록 선택권 도입, 증액률이 첫 번째 해는 4.7%, 네 번째 해는 5.3%로 더 오래 연기할수록 연금액이 증가함
 - (스페인) 연기연금 선택 시 이전에는 연 4%의 증액률이 1년 단위로만 누적되었으나, 2025년부터 최소 18개월 연기 시 6개월마다 2%씩 누적됨
 - 3) 은퇴 이후 근로 장려
 - (덴마크) 연금수급연령 이후 첫 2년 동안 근로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정액 수당¹⁾ 인상. 해당 수당은 첫째 전체평균임금의 9.2%, 두 번째 해 5.5%를 지급하였으나, 2026년~2029년에는 추가 인상 예정

¹⁾ 연금 수급 연기와 관계없이 연평균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들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 (핀란드) 근로소득에 대한 우대 과세가 적용되는 연령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2026년 기준 연금수급연령 1961년 출생자 64세 9개월, 1962년~1964년 출생자 65세)

○ 근로-연금 병행(Combining work and pensions)

1) 연금수급자의 근로병행 강화

- (일본) 2026년 4월부터 재직노령연금의 지급정지 기준액을 월 51만 엔에서 월 65만 엔으로 약 24% 상향 조정할 예정
- (스페인)²⁾
 - 개혁 이전: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 최소 1년 이상 연금의 수급을 연기하고, 완전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자에 한해 근로와 연금의 병행이 가능했으며, 이 기간에는 연금의 50%만 지급
 - 개혁 이후: 완전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연금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근로와 연금의 병행 가능. 여전히 최소 1년 이상 연금의 수급을 연기해야 하나, 1년 연기한 경우 연금의 45%를 받을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연기한 경우에는 연금 전액을 받으면서 근로 가능

2) 부분퇴직의 유연성 강화

- (스페인) 부분퇴직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50%까지만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근로시간을 25%~7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변경
- (스위스) 2024년부터 부분퇴직제도 시행. 근로시간을 20~80%까지 줄일 수 있고, 연금수급 연령(2026년 기준 남 65세, 여 64세 6개월) 2년 전부터 70세까지 가능,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연금수급비율도 최대 세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 가능(초기 근로시간 감소-추가 근로시간 감소-고용 종료). 조기연금 수급기간에는 감액이, 연기연금 수급기간에는 보너스가 적용됨

○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연금액 인상

- (칠레)
 - 적립식(FDC) 연금의 사용자 보험료를 2034년까지 1.5%에서 8.5%로 증가시키고, 전체 보험료 가운데 4.5%p는 개인적립계좌로 납부되어 미래 연금액이 증가될 예정
 - 기여형 기초연금(Beneficio por Años Cotizados)을 도입하여 2026년부터 지급 예정, 수급연령은 65세, 여성은 최소 10년, 남성은 최소 20년 기여기간 필요, 급여는 12개월 기여기간 당 0.1UF, 월 최대 2.5UF(25년 기여) 지급

²⁾ 스페인 공적연금의 연금수급연령은 2026년 기준 66세 10개월이나, 38년 3개월의 가입 기간(완전노령연금을 위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65세에 연금 수급 가능

- (한국)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의 소득대체율 감소 계획(2008년 50%→2028년 40%)을 멈추고(2025년 41.5%), 2026년부터 43%로 인상
- (스위스) 공적연금에서 12개월분 연금 외에 추가로 1개월분 연금을 지급하는 13번째 연금을 도입하여 2026년 12월 지급 예정, 지급액은 해당연도에 수급받은 노령연금 지급액의 1/12

○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선

- (아일랜드) 기여형 기초연금(PRSI: Paying social insurance)의 보험료를 상향 조정, 2025년 ~2028년 사이에 근로자 보험료를 4.1%에서 4.7%, 사용자 보험료를 11.15%에서 11.75%로 증가
- (한국)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2025년 9%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상향 조정
- (체코)
 - 개혁 이전: 공적연금 연금액 산정 시 평균임금의 42% 이하 소득은 100% 반영되고 초과분은 일부만 반영, 급여산정률 1.5%
 - 개혁 이후: 기준소득 반영비율을 2026년부터 매년 1%p씩 감소시켜 2036년부터는 해당 구간의 소득의 90%만 반영. 급여산정률도 2026년~2035년 동안 매년 0.005%p씩 인하되어 1.45%로 낮아질 예정

○ 적용대상 확대

1) 공적연금 적용대상 확대

- (일본)
 - 개혁 이전: 시간제 근로자가 공적연금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당 최소 20시간 근무하고, 소득 기준(평균임금의 약 20%)을 초과하고, 50명 초과 사업장에서 근무
 - 개혁 이후: 2028년까지 소득기준 폐지, 2027년~2035년 사이에 사업장 규모 기준도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장 중 특정 업종(농어업, 식당, 호텔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예외는 2029년부터 신규 사업장에 한해 폐지 예정
- (한국)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멕시코) 2022년부터 가사근로자, 2025년 6월부터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공적연금 적용 확대

2) 양육크레딧 도입 및 확대

- (체코)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매달 500CZK를 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였으나, 2027년부터는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자녀당 3년의 양육크레딧이 적용되고,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의 추가 연금액 지급이 유지됨
- (한국) 이전에는 둘째 자녀부터만 인정되던 출산크레딧이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

▶ 성별연금격차 – 기획 주제

○ 성별연금격차 현황

- OECD 국가들의 평균 성별연금격차(GPG: average gender pension gap)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중 남성의 평균 연금액 대비 여성의 평균 연금액이 얼마나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2007년 28%에서 2024년 23%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격차가 있음
- 또한 코스타리카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66세 이상 여성의 소득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이 남성보다 높아, 노년 여성의 빈곤 위험이 노년 남성보다 높음

○ 성별연금격차 원인

- 연금액의 상당 부분이 소득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생애 소득에서의 성별 차이는 성별연금격차의 주요 원인임
- 2023년 OECD 국가 평균 35%에 달하는 성별 생애 소득 격차는 예상 경력 기간,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에서의 나타나는 성별 차이가 거의 대등한 비중으로 영향을 미침

1) 예상 경력 기간(Expected career duration)

- 2023년 OECD 국가 평균 여성의 예상 경력 기간(생애 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34.3년으로, 남성보다 약 6년(15%) 짧음
- 예상 경력 기간의 성별 격차는 1980년 17.9년에서 2023년 5.9년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여성의 경력 기간이 2000년 27.9년에서 2023년 33.3년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침

2) 근로시간

- OECD 국가 평균 남녀 근로시간 차이는 2023년 5.1시간(약 13%)으로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격차는 2008년에서 2023년까지 1.5시간 감소하였는데, OECD 국가 평균 남성 근로시간이 2005년 42.4시간에서 2023년 40.0시간으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침

3) 시간당 임금

- 시간당 임금의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평균 11.4%로 큰 편이며, 2008년 이후 3.9%포인트 감소하였음
- 여성이 주요 양육자로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 시간당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침

○ OECD 국가 연금 제도와 성별연금격차

1) 성별 연금수급연령 차이와 성별연금격차

- 여성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거나 성별 기대수명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국가에서는 여성의 연금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 지난 30년 동안 벨기에, 체코, 독일,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남녀 간 연금 수급 자격 요건이 수렴되어 성별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하지만 여전히 9개국에서는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이 남성보다 낮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터키는 변경예정이 없으나, 오스트리아, 리투아니아, 스위스에서는 남녀 연금수급연령 격차가 해소될 예정

2) 연금 제도의 성별임금격차 및 경력단절 영향

- 대부분의 의무연금제도는 성별임금격차가 성별연금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하고 있음, OECD 국가들의 평균 성별임금격차는 23%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별연금격차는 경력단절이 없는 근로자들의 경우 15%로, 1/3 수준까지 감소

3) 양육 및 돌봄 크레딧의 성별연금격차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자녀 양육을 위한 경력단절이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양육 크레딧, 연금 가산점, 연금보너스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음
- OECD 국가의 의무연금제도는 자녀 두 명이 있는 여성의 양육으로 인한 5년간의 경력단절이 연금액에 미치는 불이익을 평균적으로 상당 부분 완화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5년의 경력단절은 전체 가입 기간의 약 11% 감소에 해당하지만, 실제 연금액 감소 폭은 평균임금 기준 약 5%에 그침
- 일부 OECD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이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의 영향을 덜 받도록 보호하고 있음. 독일은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3년간 평균임금을 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는 양육기간 동안 연금 산정에 활용되는 점수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데,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포인트를 부여함
-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에서는 가족 돌봄 기간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는데, 이는 주로 여성에게 적용되며 성별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줌

4) 유족연금, 연금분할 및 배우자 수당과 성별연금격차

- 유족연금의 목표는 유족의 생활수준 하락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성별연금격차를 완화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향상 및 유족연금의 소득심사요건이 강화되어 유족연금이 성별연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또한,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수급 가능한 유족연금은 여성의 취업을 저해하여 성별연금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
- 분할연금은 노동시장 참여도가 낮은 배우자의 경우 더 큰 재정적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성별연금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임

- 배우자 수당은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별연금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한국과 미국은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일본은 제3호 가입자 제도(전업배우자 등의 보험료를 면제하면서도 가입기간을 인정)를 통해 배우자가 취업하지 않은 기간을 기초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며, 벨기에는 기여형 연금에 가입한 부부에게 더 높은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음

○ 정책적 함의

- 장기적으로 성별연금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고용, 근로시간, 임금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것임, 특히 남녀 간 무급 돌봄 노동 분담의 불균형과 교육 및 노동 시장 진출 경로의 지속적인 격차는 큰 영향을 미침
- 연금 제도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노인 소득 불평등 완화로, 기초연금, 경력단절 및 돌봄 기간에 대한 크레딧 제공, 유족연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연금 가입을 위한 최소 소득 또는 근로시간 요건을 낮추고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성별연금격차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